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민형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1

발의연월일: 2024. 6. 19.

발 의 자:민형배・이정문・김태선

박홍배 • 이수진 • 주철현

이훈기 • 부승찬 • 윤종군

허 영ㆍ이언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대부업체 방송광고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은 음성도 포함 해야 합니다.

현재 대부업 방송광고는 대부이자율, 과도한 채무 위험성, 개인신용 평점 하락 가능성 등을 음성 안내 없이 문자로만 표기합니다.

텔레비전방송 등 영상과 음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매체를 통해 광고하면 소비자가 이자율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인지 없이 대부계약을 체결할 우려가 있습니다.

이에 대부업자등이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광고를 할때, 과도한 채무 위험성 및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, 대부·연체 이자율을 문자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게 하고자 합니다. 대부계약의 중요한 사실 미인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

위한 것입니다(안 제9조제5항 신설 등).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대부업자등은 「방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, 대부이자율(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) 및 연체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제4항에 따른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여야한다.

제9조의6제2항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8호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방송광고의 음성전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)	제9조(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)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대부업자등은 「방송법」
	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
	용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
	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도
	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
	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
	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, 대부
	이자율(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
	을 포함한다) 및 연체이자율에
	관한 사항을 제4항에 따른 표
	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여
	<u>야 한다.</u>
<u>⑤</u> (생 략)	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제9조의6(불법 대부광고에 사용	제9조의6(불법 대부광고에 사용
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)	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·도지사등은 제9조제2항	2
부터 <u>제4항</u> 까지 또는 제9조의3	<u>제5항</u>
제1항을 위반한 광고를 발견한	
경우 광고를 한 자에게 기한을	
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	

할 수 있으며, 그 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 보통신부장관에게 광고에 사용 된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.

- ③ ④ (생 략)
- 제2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~ 7. (생략)
 - 8. 제9조제2항, 제3항 또는 <u>제5</u> <u>항</u>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9. ~ 12. (생 략)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- 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
 - 7. ~ 10. (생략)
 - ③ (생 략)
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21조(과태료) ①
,
1. ~ 7. (현행과 같음)
8 <u>제6</u>
<u>ठ</u> ो
9. ~ 12. (현행과 같음)
2
1. ~ 6. (현행과 같음)
6의2.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
방송광고의 음성전달에 관한
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
7. ~ 10. (현행과 같음)
③ (현행과 같음)